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7

발의연월일: 2020. 6. 10.

발 의 자:홍성국·강선우·강준현

강훈식 · 김경협 · 김남국

김두관 · 김민철 · 김병욱

김상희 · 김수흥 · 김승남

김영배 · 김원이 · 김윤덕

김정호 · 김종민 · 김진애

김진표 · 김형동 · 김회재

남인순 · 도종환 · 문정복

문진석 · 민형배 · 박범계

박병석 • 박성준 • 박영순

박완주 · 박재호 · 박찬대

변재일 · 서동용 · 서삼석

소병훈 · 송기헌 · 송영길

송재호 · 양기대 · 양정숙

양향자 • 어기구 • 오영환

우상호 • 우원식 • 윤관석

윤영덕 • 윤재갑 • 윤호중

이병훈 · 이수진 · 이수진비

이용빈 · 이용선 · 이원욱

이장섭 · 이정문 · 이학영

이해식 · 임오경 · 임종성

임호선 · 장경태 · 장철민

전재수 · 전해철 · 정정순

정청래·정태호·조승래 진성준·최인호·최혜영 한준호·홍기원·홍익표 홍정민·황운하 의원 (8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과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에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그러나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 부처들이 국회와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잦은 국회 출장으로 인한 정책의 질 저하 등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정운 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국회세종의사당) ①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4(국회세종의사당) ① 국 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 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 당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회세종의사 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 한다.